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시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원고는 야간경비원으로 근무 중 회사 경비실에서 허혈성 및 급성심부전에 따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람(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피고는 회사의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이 당해 년도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기본근로 이외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의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설시하고 원심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박성기
변호사

02-316-4280
skipark@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윤혜영
변호사

02-316-4491
hyyun@shinkim.com

송우용
변호사

02-316-1696
wysong@shinkim.com

김종현
변호사

02-316-1721
johkim@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